

수원지방법원 2015. 12. 10 선고 2014나442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5. 12. 10 선고 2014나442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. 1. 8 선고 2013가단21154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피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5. 10. 8.

판결 선고 2015. 12. 10.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. 1. 8. 선고 2013가단21154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.03/15

지분에 관한 2013. 6. 13.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.03/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. 7. 3. 접수 제33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원고는 항소이유로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와 B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B과 E가 15분의 1.03 지분, F이 15분의 1.0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1/3씩 나누어 B뿐만 아니라 E와 F 앞으로 각각 입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피고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종광

판사최혜승

판사김선아

별지